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7.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3일, 박해철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6.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
체토론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24.6.28.) 상정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7.9.) 상정 · 축조심사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4.7.1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7.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4.7.22.) 상정 · 안전조정위심사보고 · 의
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노동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에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다음,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의 심각한 제약과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노동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인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해서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 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비용추계서

없 음

12. 기타 사항

없 음